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58

□ 제안이유

○ 용어정비를 통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용어정비(교육감이 정한다 → 교육규칙으로 정한다)
(시행세칙 → 시행규칙)

□ 첨 부

○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○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중 "시행세칙"을 "시행규칙"으로 하고 "교육감이"를 "교육규칙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9조(시행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	**제9조(시행규칙)**---------- ----------교육규칙으로 -------